

「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9월 2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9월 2일

라. 상정일자: 2025년 9월 11일

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미래교육돌봄국장 박 노 돈

나. 제안이유

-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위탁 발생 및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및 현장 경험이 있는 적정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
 - 2개소 : 문수의집(남아/신규위탁), 아이좋은집(여아/재위탁)
- 추진근거
 - 「아동복지법」 제53조의2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)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 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,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 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, 제6조
- 필요성
 - 아동보호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
 - 행정비용 · 재정 절감으로 효율성 증대
- 위탁사무 :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· 운영 전반
 -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, 생활지원, 상담 및 치료, 교육 · 정서 지원
 - 종사자 인사, 회계, 시설 및 물품 관리 등
 - 그 밖에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시설개요
 - 위탁시설 현황

| 시설명 | 소재지 | 시설규모 | | | 인가일 | 위탁사유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종사자 | 정원 | 면적(m ²) | | |
| 문수의집 (신규위탁) | 구미시 관내 (비공개) | 6 | 7 | 98.5m ² (2층 주택) | 03.03.19 (재개 16.05.19) | 운영 재개 후 위수탁 미체결 |
| 아이좋은집 (재위탁) | | | | 111.66m ² (1층 주택) | 21.07.08 (개소 21.09.01) | 위·수탁 기간 만료 도래 (25.12.31) |

- 위탁기간 : 2026. 1. 1. ~ 2030. 12. 31.(5년)
- 위탁조건
 - 수탁업무 외 위탁 및 법인, 단체사무 처리 불가
 - 보조금 및 수익재산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함
 - 「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,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, 구미시와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·최종 선정
- 소요예산 : 728백만원(국 30% 도 21% 시 49%) ※ 2026년 기준
 - 시설당 364백만원(인건비 82%, 운영비 4%, 사업비 14%)
- 적정성 검토 : 적정 ※ 2025년 제2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 - 신규 위탁(문수의집), 재위탁(아이좋은집)
- 성과평가 결과 : 우수(82점)
 - 재위탁 대상 아이좋은집(여아쉼터)에 해당
- 부서의견
 -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적정
 - 피해아동의 다양한 복지 욕구 대응 시 축적된 민간 전문 지식 활용 용이하고, 행정비용·재정 절감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 제고 가능
 - 공개모집을 통해 여러 기관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, 경쟁력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 기여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,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- 비용추계서
- 성과평가 결과

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, 인건비, 사업비 등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가. 보건복지부 및 경상북도 보조사업 내시 산출 근거에 따라 편성
- 나.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, 매년 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함.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가. 5년간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(2개소) 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은 총 4,010,000천원으로 연평균 802,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- 나. 2차 연도부터 매년 인상률 약 5%로 반영함.

(단위:천원)

| 구분 \ 연도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| 5차년도 | 합계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세출 | 728,000 | 765,000 | 802,000 | 839,000 | 876,000 | 4,010,000 |

4. 재원조달 방안

- 보건복지부 및 경상북도 보조사업, 자체 재원 마련

(단위:천원)

| 구분 \ 연도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| 5차년도 | 합계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국비 | 218,400 | 229,500 | 240,600 | 251,700 | 262,800 | 1,203,000 |
| 도비 | 152,880 | 160,650 | 168,420 | 176,190 | 183,960 | 842,100 |
| 시비 | 356,720 | 374,850 | 392,980 | 411,110 | 429,240 | 1,964,900 |
| 민간 | - | - | - | - | - | - |
| 기타 | - | - | - | - | - | - |
| 합계 | 728,000 | 765,000 | 802,000 | 839,000 | 876,000 | 4,010,000 |

5. 부대의견 : 본 추계결과는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에 따라 재정 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.

6. 작성자 : 아이돌봄과 아동보호팀 서인석(☎480-6593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| 사무명 | | |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위탁금 | | | 4,010,000천원(5년간) |
| 위탁금 세부내역 | | | |
| 기간 | 항목 | 계(천원) | 산출내역 |
| 2025년 기준 | 합계 | 728,000 | |
| | 인건비 | 596,000 | • 급여 및 제수당 등 : 298,000천원 × 2개소 |
| | 운영비 | 38,000 | •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: 19,000천원 × 2개소 |
| | 사업비 | 94,000 | • 학대피해아동 관련 사업비 : 47,000천원 × 2개소 - 심리치료, 교육비(도서구입 등), 의료비(건강검진 등) |

※ 매년 약 5% 인상률 기준

학대피해아동쉼터(아이좋은집) 성과평가

1. 평가개요

- 추진근거 :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, 제23조
- 기 간 : 2025. 7. 3.(목) ~ 7. 4.(금)
- 대 상 : 학대피해아동쉼터(아이좋은집)
- 위탁 기관 : 다사랑 사회적협동조합
- 평 가 자 : 2명(아동보호팀장, 업무담당자)
- 평가방법 : 평가표[붙임]에 의한 현장평가
- 평가항목 : 7개 항목 20개 지표(사업계획, 인력관리 등)

◇ 공통분야(40점)

- ① 사업계획 :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집행 준수
- ② 인력관리 : 조직·인력관리적성성, 근태관리
- ③ 예산관리 : 예산 및 지출 관리 체계 및 집행의 적정성
- ④ 성과관리 : 사업목표 달성 수준,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

◇ 개별분야(60점)

- ① 조직운영 : 시설 환경, 시설장 리더쉽, 직원 역량강화 및 복지 등
- ② 아동의권리 : 비밀보장,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, 고충처리
- ③ 프로그램 및 서비스 : 개별서비스 제공의 전문성,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

2. 평가결과 및 총평

- 결 과 : 82점(우수) * 60점 이상 시 재위탁/재계약 가능

| 총점 (100) | 공통분야(40점) | | | | 개별분야(60점)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사업 계획 (10) | 인력 관리 (10) | 예산 관리 (10) | 성과 관리 (10) | 조직 운영 (30) | 아동의 권리 (15) | 프로그램 및 서비스 (15) |
| 82 | 8 | 7 | 7 | 8 | 25 | 14 | 13 |

○ 총 평

- 아동학대로 피해 입은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,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,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.
- 또한, 시설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아동 복지 증진과 적합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동의안은

- 학대피해아동에게 신속한 보호조치와 치료·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학대피해 아동쉼터의 민간위탁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 아동에게 숙식, 생활 지원, 상담·치료, 교육 및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필수적 보호시설로서,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기관을 통한 민간위탁은 서비스 질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된 본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, 상당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온 바,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.
- 또한, 집행기관에서는 이용 아동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법률 상담사 등 외부 전문가 및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, 병원 등과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, 쉼터가 단순한 보호 공간을 넘어 아동 학대 예방과 자립 지원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 략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